

## 정책 제15호에 대한 부록 1

정책 주제:

재정 지원

1/5페이지

발효일: 2016년 1월 7일

3년마다 경영진 검토를 거칠 것

검토 기일: 2019년 1월 7일

### 목적

본 부록 1은 카톨릭헬스이니셔티브(CHI) 정책 제15호 "재정 지원"(이하 "정책 제15호")의 "기타 법규와의 조정" 절에 따라 병원 자선 진료(Hospital Charity Care) 프로그램 조항과 관련된 워싱턴 주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자 정책 제15호를 수정 및 보완한다. 본 부록 1은 정책 제15호에서 정의한 대로 워싱턴 주의 모든 CHI 직접 제휴 기관 및 면세 대상 자회사에 적용된다.

참조를 위해 본 부록 1의 절 제목은 정책 제15호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병원 시설 지도부와 시설 수익 주기 팀은 본 부록 1과 정책 제15호의 시행에 책임을 진다.

### 정책

정책 제15호의 응급 및 기타 의학적 필요에 따른 치료(EMCare) 내용은 WAC 246-453-010(7)과 (11)에서 설명하는 "적절한 병원 시설 기반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치료 또는 응급 서비스"의 정의와 일치하게 해석된다.

### 정의

WAC 246-453-020(17)에 따라, "가족 소득"은 임금, 복지 급여, 사회 보장 급여, 과업 수당, 실업 수당과 장애 수당, 양육 지원금, 이혼 수당 수급에 따른 총 세전 현금 수입, 그리고 사업 및 투자 행위에 따른 순수입을 의미한다.

### 재정 지원 수급 자격

1. 환자의 재정 지원 자격 심사에는 최소 계정 잔액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정책 제15호에서 정의한 대로 "환자 협조 표준"은 다음의 범위에 한해 적용된다.
  - WAC 246-453-020(1)에 따라 병원 시설에서 확인 가능한 제3자 배상보험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책 제15호에 대한 부록1

정책 주제:

재정 지원

2/5페이지

발효일: 2016년 1월 7일

3년마다 경영진 검토를 거칠 것

검토 기일: 2019년 1월 7일

- WAC 246-453-020(4)에 따라 각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장할 수 있는 제3자 후원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시설에서 합당한 수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 WAC 246-453-020(5)에 따라 책임 당사자의 자선 진료 후원 신청 절차 준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결함이나 언어 장벽을 고려하여 해당 책임 당사자에게 비합리적 부담을 지우는 신청 절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정 지원 신청 방법

1. 피후원 상태를 가결정하기 위해 병원 시설은 책임 당사자가 구두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WAC 246-453-030(1)에 따라, 병원 시설은 피후원 상태 가결정을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책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책 제15호에 기재된 문서와 WAC 246-453-030(2)에 따라, 소득 정보가 연간 기준으로 적절히 환산된 경우 다음 문서 중 어떤 것이든 자선 진료 피후원 상태 최종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간주된다.
  - 메디케이드(Medicaid) 및/또는 주에서 지원하는 의료 부조 수급 자격을 승인 또는 부인하는 문서
  -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승인 또는 부인하는 문서
  - 고용주 또는 복지 기관의 서면 진술서
3.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지적 능력으로 인해, 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신청 절차 수행이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 병원 시설은 필요할 경우 신청 절차를 도와 줄 통역사를 고용하는 등 원활한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병원 시설은 재정 지원 수급 자격 가결정 및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시에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의 소득이 가족 규모에 따라 조정된 연방빈곤기준선의 200% 이하임을 나타내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서(본 문서에 안내되어 있음)를 수령할 경우 병원 시설에서 신청 기간 이후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재정 지원 가결정 및 최종 결정을

## 정책 제15호에 대한 부록1

정책 주제:

재정 지원

3/5페이지

발효일: 2016년 1월 7일

3년마다 경영진 검토를 거칠 것

검토 기일: 2019년 1월 7일

내릴 수 있다. 재정 지원 수급 자격 최종 결정 시기는 악성 부채와 구분되는, 매출의 자선 진료 공제액에 대한 병원 시설의 확인과 무관하다. WAC 246-453-020(10).

5. 재정 지원 수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결정된 책임 당사자에게는 피후원 상태 최종 결정 이전에 WAC 246-453-020(3)에서 기술하는 문서를 취득 및 제출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해당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시간, 또는 최소 십사(14)일이 주어진다.
6. WAC 246-453-030(4)에 따라, 책임 당사자가 상기의 어느 문서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병원 시설은 책임 당사자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책임 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에 의존해야 한다.
7. WAC 245-453-030(5)에 따라, 소득 및 가족 규모 확인을 위해 병원 시설이 책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책임 당사자의 자선 진료 피후원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즉시 입수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후원 신청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수급 자격 관련 사실만 확인될 수 있으며, 확인서 부분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8. WAC 246-453-020(7)에 따라 병원 시설은 정보 수령일로부터 십사(14) 일 이내에 재정 지원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피후원 상태 최종 결정을 통지한다. 이 통지는 책임 당사자의 재정 부담액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9. 병원 시설이 책임 당사자의 재정 지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시설은 책임 당사자에게 해당 거부 사실과 근거를 통지한다.
10. 책임 당사자가 적절한 EMCare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당시의 재정 지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지불금 중 적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선 진료 대상자로 지정되는 날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환자에게 환불된다. WAC 246-453-020(11).

추정적 수급 자격

## 정책 제15호에 대한 부록 1

정책 주제:

재정 지원

4/5페이지

발효일: 2016년 1월 7일

3년마다 경영진 검토를 거칠 것

검토 기일: 2019년 1월 7일

1. 병원 시설측 담당자에게 알려진 책임 당사자의 신원이 저소득자임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병원 시설측 담당자가 정책 제15호에 제시된 개인 생활 환경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WAC 246-453-040에서 설명하는 광범위한 기준 내에서 소득 수준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 경우 병원 시설은 책임 당사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정확한 소득 수준을 증명하거나 책임 당사자에게 문서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

### 부가 조항 - 이의 제기

1. 재정 지원이 거부된 모든 책임 당사자는 문서 내 결함을 시정하거나 거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절차가 제공 및 통지되며, 이 절차를 밟을 경우 병원 시설의 최고 재무 관리자가 결정을 검토한다.
2. 재정 지원 수급 자격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요청을 위해 삼십(30) 일이 주어짐을 책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기간이 시작된 후 십사(14) 일 동안은 병원 시설에서 문제의 계정을 외부 추심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병원 시설이 추심을 시작한 후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이의 제기가 완료될 때까지 추심을 중지한다. 십사(14) 일의 기간이 지나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병원은 추심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의 제기 결과, 이전에 내려진 재정 지원 거부 결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병원 시설은 주 법에 따라 보건부와 책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한다.